##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8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조경태·이헌승·서천호

곽규택 • 박상웅 • 김태호

정성국 • 유용원 • 엄태영

권영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·조 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.
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·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 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,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 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.

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·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##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선박으로서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출입 신고 및 제2항의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입 신고) ①・② (생 략)	제4조(출입 신고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
	의 장이나 「국제항해선박 및
	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
	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
	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
	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
	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
	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
	출입 신고 및 제2항의 수리가
	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